

「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동의안」

제 안 설 명

- 의안번호 제969호 「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동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본 동의안은
 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할 경우,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바,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 -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2003년 설립된 이후 “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제11조에 의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 -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이 2020 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